

###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DS842)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및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주식 가격변동위험, 중소형주 투자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으로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내외 주시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li> <li>- 이 투자신탁은 아래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li> </ul>										
	펀드명칭		투자한도		주요 전략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 1 호[주식]		자산총액의 55%이상 (실질국내주식보유 비율 <sup>1</sup> 은 40% 이상)		국내 중소형주(KOSPI 또는 KOSDAQ 시가총액비중이 1% 미만인 주식)에 주로 투자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산총액의 40%이하		향후 글로벌 성장과 투자의 핵심 요소인 '혁신적 파괴(Disruption)' 테마에 부합하는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						
<p>주1) 실질 국내주식보유비율: 해당 모투자신탁(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1호[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해당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을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li> <li>-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도 별도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li> </ul>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클래스 종류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195	0.6	1.89	1.2139	124	254	388	671	1,47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895	0.3	1.31	0.9143	94	191	293	508	1,12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S-T)	없음	0.765	0.17	-	0.7844	80	164	252	437	975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 (혹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1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03.18 ~ 26.03.17	24.03.18 ~ 26.03.17	23.03.18 ~ 26.03.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e) (%)	2023.03.17	57.35	33.60	29.78	-	30.23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16.90	15.31	14.15	-	14.15

(주 1) 비교지수: 해당사항없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6.03.17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개,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외혼합-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안형준	1985	책임 (팀장) 국내주식운용	9	2,221	58.68	34.76	55.69	34.74	8년 6개월
고건희	1991	부책임 (과장) 국내주식운용	12	2,473	58.68	34.76	55.69	34.74	9년 2개월
이능규	1985	책임 (팀장) 해외주식운용	16	2,170	58.68	34.76	55.69	34.74	9년 11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 2 본부 및 글로벌주식 1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 및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 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위험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증권의 가격 변동,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중소형주 증권모(母)투자신탁 1호[주식]'은 중소형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중소형주증권모(母)투자신탁 1호[주식]'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의 경우 회사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경제상황 변동의 악재 등에 더 민감하고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할 수 있어, 가격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이 대형주 투자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해외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NH-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화 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도 별도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p> <p>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펀드는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NH-Amundi 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p><b>매입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li> <li>• 17 시 경과 후: 4 영업일 기준가 매입</li> </ul>	<p><b>환매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 시 이전: 4 영업일 기준가 8 영업일 지급</li> <li>• 17 시 경과 후: 5 영업일 기준가 9 영업일 지급</li> </ul>															
<p><b>환매수수료</b></p>	<p>해당사항 없음</p>																
<p><b>기준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li> <li>-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li> <li>• 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li> <li>-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li> </ul> </li> </ul>																
<p><b>과세</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과세의 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 <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 </tr> <tr> <td>수익자</td> <td>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b>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gt;</b></p> <p>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td> </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b>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gt;</b></p> <p>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b>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gt;</b></p> <p>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b>&lt;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gt;</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입자격</td> <td>가입일 현재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함</td> </tr> <tr> <td>가입기간</td> <td>2024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이 투자신탁의 경우, 매입청구일(자금납입일)로부터 3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므로, 2024 년 12 월 27 일 17 시 이전까지의 매입청구(자금납입)분까지 적용됩니다.</td> </tr> <tr> <td>저축계약기간</td> <td>3 년 이상 5 년 이하 ※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td> </tr> <tr> <td>가입한도</td> <td>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td> </tr> <tr> <td>세제혜택</td> <td>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연 240 만원 한도)</td> </tr> <tr> <td>감면세액추징</td> <td>가입 후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td> </tr> <tr> <td>기타</td> <td>i) 가입자의 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 종합소득금액이 6 천 7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i)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iv)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음</td> </tr> </tbody> </table> <p>※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5 페이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구분	주요 내용	가입자격	가입일 현재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함	가입기간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이 투자신탁의 경우, 매입청구일(자금납입일)로부터 3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므로, 2024 년 12 월 27 일 17 시 이전까지의 매입청구(자금납입)분까지 적용됩니다.	저축계약기간	3 년 이상 5 년 이하 ※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연 240 만원 한도)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기타	i) 가입자의 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 종합소득금액이 6 천 7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i)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iv)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음
구분	주요 내용																
가입자격	가입일 현재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함																
가입기간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이 투자신탁의 경우, 매입청구일(자금납입일)로부터 3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므로, 2024 년 12 월 27 일 17 시 이전까지의 매입청구(자금납입)분까지 적용됩니다.																
저축계약기간	3 년 이상 5 년 이하 ※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연 240 만원 한도)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기타	i) 가입자의 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 종합소득금액이 6 천 7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iii)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iv)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음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효력발생일**

2026 년 4 월 28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 기준을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